

# 더 플래티넘 센트럴포레 입주자모집공고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821-999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경기도 양주시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택지유형		계약체결		계약체결		계약체결	
민간택지		2026년 3월 16일(월) ~ 3월 18일(수)		2026년 3월 16일(월) ~ 3월 18일(수)		2026년 3월 16일(월) ~ 3월 18일(수)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년 2월 13일(금)	2026년 2월 23일(월)	2026년 2월 24일(화)	2026년 2월 25일(수)	2026년 3월 4일(수)	2026년 3월 7일(토) ~ 3월 11일(수)	2026년 3월 16일(월) ~ 3월 18일(수)

## 1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등에 따른 잔여세대에 대하여 일반분양으로 공급하며, 발코니확장 및 기본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선택이 불가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사중인 현장으로 2026년 3월 31일 이후에는 공정 진행상황(2026년 2월 13일 기준 공정률 47.2%)에 따라 일부 추가선택품목의 선택이 제한 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b>500%</b>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b>500%</b> 까지 <b>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b> 가점순으로 선정 (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b>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b>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양주더플래티넘.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6.02.13.(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년 2월 23일(월)	2026년 2월 24일(화)	2026년 2월 25일(수)	2026년 3월 4일(수)	2026년 3월 7일(토) ~ 3월 11일(수)	2026년 3월 16일(월) ~ 3월 18일(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더 플래티넘 센트럴포레 건본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플래티넘 센트럴포레 건본주택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860)</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10.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람,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신청자는 이를 분명히 인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양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 03. 04)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 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 공동주택과-5753호(2026. 02. 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양주시 삼승동 187-47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0층 8개동 총 600세대 중 일반분양 112세대

[특별공급 62세대(기관추천 11세대, 다자녀가구 11세대, 신혼부부 26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1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세대당 m <sup>2</sup> )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6000034	01	059.9982A	59A	59.9982	20.4014	80.3996	42.1082	122.5078	34.5795	27	2	2	6	1	4	15	12	2
	02	059.9988B	59B	59.9988	20.3704	80.3692	42.1086	122.4778	34.5798	17	2	2	4	1	1	10	7	2
	03	059.9973C	59C	59.9973	21.2284	81.2257	42.1076	123.3332	34.5790	3	-	-	1	-	-	1	2	-
	04	074.9963	74	74.9963	24.5567	99.5530	52.6342	152.1872	43.2235	18	2	2	4	1	1	10	8	1
	05	084.9988A	84A	84.9988	27.1064	112.1052	59.6542	171.7595	48.9884	42	4	5	10	1	3	23	19	5
	06	084.9993B	84B	84.9993	27.8813	112.8806	59.6546	172.5351	48.9887	5	1	-	1	-	1	3	2	-
<b>합 계</b>										<b>112</b>	<b>11</b>	<b>11</b>	<b>26</b>	<b>4</b>	<b>10</b>	<b>62</b>	<b>50</b>	<b>10</b>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 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최상층 세대는 다락구조이며,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m<sup>2</sup> × 0.3025 또는 m<sup>2</sup>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벽체공용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가 속한 동의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 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는 총 공급세대(112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 및 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타입)	동호 라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6-06-24	2026-08-24	2026-09-24	2026-10-24	2026-11-24	2027-01-24	입주지정일	
59A	104동 5, 6호	1층	2	88,549,000	273,451,000	-	362,000,000	10,000,000	2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108,600,000
	105동 4호	3~5층	3	88,549,000	284,451,000	-	373,000,000	10,000,000	2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111,900,000
	106동 1, 2, 5호	6~10층	8	88,549,000	291,451,000	-	380,000,000	10,000,000	2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14,000,000
	107동 5호	11~15층	7	88,549,000	298,451,000	-	387,000,000	10,000,000	2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116,100,000
	108동 3, 6호	16~19층	5	88,549,000	302,451,000	-	391,000,000	10,000,000	2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117,300,000
	108동 3호	20층 (최상층)	1	88,549,000	363,451,000	-	452,000,000	10,000,000	3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35,600,000
	105동 4호	18층 (최상층)	1	88,549,000	363,451,000	-	452,000,000	10,000,000	3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35,600,000
59B	106동 3, 4호 107동 3, 4호	1층	2	88,549,000	273,451,000	-	362,000,000	10,000,000	2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108,600,000
		3~5층	3	88,549,000	284,451,000	-	373,000,000	10,000,000	2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111,900,000
		6~10층	4	88,549,000	291,451,000	-	380,000,000	10,000,000	2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14,000,000
		11~15층	6	88,549,000	298,451,000	-	387,000,000	10,000,000	2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116,100,000
		16~19층	2	88,549,000	302,451,000	-	391,000,000	10,000,000	2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117,300,000
59C	104동 4호	7층	1	88,549,000	291,451,000	-	380,000,000	10,000,000	2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14,000,000
		18층	1	88,549,000	302,451,000	-	391,000,000	10,000,000	2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117,300,000
		20층 (최상층)	1	88,549,000	363,451,000	-	452,000,000	10,000,000	3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35,600,000
74	105동 2, 3호 108동 4, 5호	2층	1	110,686,000	346,314,000	-	457,000,000	10,000,000	3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137,100,000
		3~5층	2	110,686,000	350,314,000	-	461,000,000	10,000,000	3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138,300,000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타입)	동호 라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잔금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6-06-24	2026-08-24	2026-09-24	2026-10-24	2026-11-24	2027-01-24	입주지정일		
84A		6~10층	4	110,686,000	359,314,000	-	470,000,000	10,000,000	3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41,000,000	
		11~15층	7	110,686,000	368,314,000	-	479,000,000	10,000,000	3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143,700,000	
		16~19층	3	110,686,000	373,314,000	-	484,000,000	10,000,000	3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45,200,000	
	105동 3호	20층 (최상층)	1	110,686,000	449,314,000	-	560,000,000	10,000,000	4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68,000,000	
	101동 1, 2호 102동 1, 2호 103동 1, 2호 104동 1, 2호 105동 1호	1층	4	125,435,000	373,565,000	-	499,000,000	10,000,000	3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49,700,000
		2층	2	125,435,000	383,565,000	-	509,000,000	10,000,000	4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52,700,000
		3~5층	10	125,435,000	388,565,000	-	514,000,000	10,000,000	4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54,200,000
6~10층		11	125,435,000	396,565,000	-	522,000,000	10,000,000	4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156,600,000	
11~15층		7	125,435,000	401,565,000	-	527,000,000	10,000,000	4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58,100,000	
107동 1, 2호 108동 1, 2호	16~19층	7	125,435,000	406,565,000	-	532,000,000	10,000,000	4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59,600,000	
103동 1호	20층 (최상층)	1	125,435,000	503,565,000	-	629,000,000	10,000,000	5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188,700,000	
84B	104동 3호	4층	1	125,435,000	388,565,000	-	514,000,000	10,000,000	4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54,200,000	
		7층	1	125,435,000	396,565,000	-	522,000,000	10,000,000	4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156,600,000	
		11~15층	2	125,435,000	401,565,000	-	527,000,000	10,000,000	4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58,100,000	
		16층	1	125,435,000	406,565,000	-	532,000,000	10,000,000	4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59,600,000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유의사항

- 세대 타입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 기실 등 그 밖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린 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 심의 결과 타입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에는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무상으로 시공되며, 비확장형으로 선택이 불가합니다.
-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입니다. 또한,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공급계약 시 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별도의 계약 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공급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

- 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체요율은 공급계약서에 의거하여 산정)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공급대금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 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고, 이때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되며, 이를 사유로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청약 및 계약 시에는 반드시 단지 내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 등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양주더플래티넘.kr>)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계약체결 후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계약서에 의거하여 공급금액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하였거나 중도금 1차 납부일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주체의 승인없이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4 특별공급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		59A	59B	59C	74	84A	84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	-	-	1	-	2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	-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	-	-	1	
	중소기업 근로자	1	-	-	-	1	-	2	
	장애인	경기도	-	-	-	1	1	-	2
		서울시	-	-	-	1	1	-	2
		인천광역시	-	-	-	-	-	1	1
소계		2	2	-	2	4	1	1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1	1	-	1	3	-	6	
	서울, 인천 거주자(50%)	1	1	-	1	2	-	5	
신혼부부 특별공급		6	4	1	4	10	1	2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	1	1	-	4	
생애최초 특별공급		4	1	-	1	3	1	10	
<b>합계</b>		15	10	1	10	23	3	6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li> <li>-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li> <li>-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li> </ul>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p>-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p>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38 317 656 352">구분</th> <th colspan="2" data-bbox="656 317 2159 352">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8 352 656 395">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 colspan="2" data-bbox="656 352 2159 395">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data-bbox="338 395 656 512"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 data-bbox="656 395 1088 459">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 data-bbox="1088 395 2159 459">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td> </tr> <tr> <td data-bbox="656 459 1088 512">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 data-bbox="1088 459 2159 512">※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38 1150 790 1214">구분</th> <th data-bbox="790 1150 1243 1214">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양주시 및 경기도)</th> <th data-bbox="1243 1150 1695 1214">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th> <th data-bbox="1695 1150 2159 1214">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8 1214 790 1246">전용면적 85㎡ 이하</td> <td data-bbox="790 1214 1243 1246">200만원</td> <td data-bbox="1243 1214 1695 1246">300만원</td> <td data-bbox="1695 1214 2159 1246">250만원</td> </tr> <tr> <td data-bbox="338 1246 790 1278">전용면적 102㎡ 이하</td> <td data-bbox="790 1246 1243 1278">300만원</td> <td data-bbox="1243 1246 1695 1278">600만원</td> <td data-bbox="1695 1246 2159 1278">400만원</td> </tr> <tr> <td data-bbox="338 1278 790 1310">전용면적 135㎡ 이하</td> <td data-bbox="790 1278 1243 1310">400만원</td> <td data-bbox="1243 1278 1695 1310">1,000만원</td> <td data-bbox="1695 1278 2159 1310">700만원</td> </tr> <tr> <td data-bbox="338 1310 790 1342">모든면적</td> <td data-bbox="790 1310 1243 1342">500만원</td> <td data-bbox="1243 1310 1695 1342">1,500만원</td> <td data-bbox="1695 1310 2159 1342">1,0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양주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양주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 관한 유의사항**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위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상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 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li> <li>■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li>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li> <li>■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li> </ul> </li> <li>■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li> <li>- 자녀수에 태어나 입양한 자녀도 포함됨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li> <li>■ ①지역 : 해당 시도 거주자 50% (양주시 및 경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시 해당주택건설지역(양주시) 거주자를 우선 선정합니다.]</li> </ul>

※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경기도 거주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b>2명</b>	<b>25</b>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2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li>■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ul>

구분	내용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당첨자  
선정방법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양주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양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구분	내용
----	----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년 2월 13일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비고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구분	내용
	<p>※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p> <p>※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p> <p>※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p> <p>※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p> <p>※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p>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종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독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주택 외</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li> </ul> </li> <li>■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양주시 거주자) →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li> <li>■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가점항목</th> <th style="width: 10%;">가점상한</th> <th style="width: 15%;">가점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h style="width: 15%;">가점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① 무주택기간</td> <td rowspan="9">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16</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② 부양가족수</td> <td rowspan="4">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r> <td>1명</td> <td>10</td> <td>5명</td> <td>30</td> </tr> <tr> <td>2명</td> <td>15</td> <td>6명 이상</td> <td>35</td> </tr> <tr> <td>3명</td> <td>2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8">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 <td rowspan="8">17</td> <td>6개월 미만</td> <td>1</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0</td> </tr> <tr> <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1</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3</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1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4</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13</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5</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14</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6</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15</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7</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16</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8</td> <td>15년 이상</td> <td>17</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9</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p>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구분	내용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p>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li> </ul>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비고	<p>■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li> </ul> <p>■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p>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li> </ul> <p>※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p>■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li> <li>-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li> <li>*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li> <li>*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li> </ul> <p>■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p>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li> <li>**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li> </ul>

구분	내용		
<b>당첨자 선정방법</b>	<b>■ 당첨자 선정 순서 :</b>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b>■ ①소득구분</b>		
	<b>단계</b>	<b>소득구분</b>	<b>내용</b>
	1단계	<b>신생아 우선공급 (15%)</b>	<b>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b>
	2단계	<b>신생아 일반공급 (5%)</b>	<b>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b>
	3단계	<b>우선공급 (35%)</b>	<b>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b>
	4단계	<b>일반공급 (15%)</b>	<b>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b>
5단계	<b>추첨공급</b>	<b>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b>	<b>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b>
		<b>1인 가구</b>	<b>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b>
<b>※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b>			
<b>■ ②지역 :</b> 해당지역 거주자(양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b>비고</b>	<b>■ 자녀기준</b>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b>■ 소득기준</b>			
<b>- 소득 확인 시점</b>			
<b>입주자모집공고일</b>	<b>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b>	<b>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b>	
<b>2026년 2월 13일</b>	<b>(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b>	<b>(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b>	

구분	내용
----	----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내용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p>*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p> <p>*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p>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득 및 조건이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 매 부양)</li> <li>■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li> <li>-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양주시 및 경기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th> <th>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li> </ul>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양주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양주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선정 순서</b></li> <li>-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b>청약통장 가입기간</b> → ④추첨</li> <li>-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li> <li>-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li> <li>■ ①<b>지역</b> : 해당지역 거주자(양주시)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li> <li>■ ②<b>가점</b></li> <li>- <b>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b></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li> </ul>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b>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b>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b>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b>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b>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b>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외국인 직계존속</p> <p>-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p>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p>-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li> </ul>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b>*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b></p>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6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일 정	2026년 2월 23일(월)	2026년 2월 24일(화)	2026년 2월 25일(수)	2026년 3월 4일(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 (청약홈 : 09:00 ~ 17:30)</li> <li>■ 정보취약계층 견본주택 접수(10:00 ~ 14:00) 더 플래티넘 센트럴포레 견본주택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860 / 031-821-999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 (청약홈 : 09:00 ~ 17:30)</li> <li>■ 정보취약계층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09:00 ~ 16: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홈 홈페이지 [PC 또는 모바일] (www.applyhome.co.kr)</li> </ul>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 (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 (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 (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b>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p><b>공고단지 청약연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li> <li>-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 <b>이용방법</b>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p><b>당첨자발표 서비스</b></p>	<p><b>청약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b>조회기간</b> : 2026년 3월 4일(수) ~ 2026년 3월 13일(금) (10일간)</li> <li>-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p><b>문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공일시</b> : 2026년 3월 4일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b>제공대상</b> : 청약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 <b>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청약신청 유의사항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로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중복청약(당첨 시) 처리기준**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본인이 동시 청약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하며 또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으로서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세대 내에서 본인과 세대원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청약이 가능하며 둘 다 당첨될 경우 둘 다 계약이 가능합니다.
-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미적용)에 세대분리된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 포함) 또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전체(타 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일반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계약이 가능합니다.

**7 자격확인 서류제출**

■ **일정 및 장소**

<b>일정</b>	- 2026년 3월 7일 (토) ~ 2026년 3월 11일 (수) 10:00~16:00 ※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b>장소</b>	- 더 플래티넘 센트럴포레 견본주택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860)
<b>유의사항</b>	- 추후 서류제출 방법 및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 <b>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b>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제출서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구분	해당 구분		제출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li> <li>※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여권 정보증명서 추가</li> <li>※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li> </ul>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주소변동사항 제외)</li> </ul>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li> </ul>
		○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발급 (장애인, 국가 유공자 제외)</li> <li>■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시 (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li> </ul>
		○	복무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10년 이상 군복무기간 명시)</li> </ul>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li> </ul>
※ 계약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해당구분		제출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일반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피부양 직계 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과거 3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 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30세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30세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과거 1년간의 내역)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 (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 (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구분	해당구분		제출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 문서 가능)</li> </ul>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li> <li>■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li> <li>※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li> </ul>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아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li> </ul>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신고일 확인</li> </ul>
		○	주민등록등표본 (전체)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li> <li>※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 발급'으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li> <li>■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li>※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	자산증빙서류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li> <li>■ 아래 '자산증빙서류' 참고</li> </ul>	

구분	해당구분		제출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li> </ul>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18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li>※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사람</li> </ul>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혼인신고일 확인</li> </ul>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li>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 문서 가능)</li> </ul>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li> <li>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li> </ul>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	자산증빙서류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li> <li>■ 아래 '자산증빙서류' 참고</li> </ul>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사람</li> </ul>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li> <li>■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li> <li>■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li> </ul>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과거 3년간의 내역)</li> </ul>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li> </ul>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li> <li>■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li> <li>■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li>■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과거 1년간의 내역)</li> </ul>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사람</li> </ul>	

구분	해당구분		제출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적격여부 소명 필요자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li> <li>■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li> <li>■ 폐가, 멸실 주택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li> <li>■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li> </ul>
		○	단신부임 입증 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li> <li>■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시 생업사정 불인정</li> </ul>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li> <li>※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주택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li> </ul>	
대리인 신청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li> </ul>
	○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사실신고증 (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 (외국인)</li> </ul>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산증빙서류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 (세대원별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li> <li>■ 행정복지센터</li> </ul>
	해당자	① 공동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 단독·공동주택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조회 → 조회결과 인쇄 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 건축물시가표준액 → 조회결과 인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복지센터</li> <li>■ 이택스 (etax.seoul.go.kr)</li> <li>■ 위택스 (www.wetax.co.kr)</li> </ul>
	해당자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복지센터</li> <li>■ 지자체 축산과 ■ 토지이음</li> </ul>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① 부동산 소유현황 (세대원별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열람/발급 → 부동산 → 소유현황 열람 → 조회결과 인쇄·제출 - "신청하신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내용 화면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원 인터넷등기소</li> <li>■ 행정복지센터</li> </ul>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특별공급)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아래 ①, ②, ③ 중 해당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li>■ 세무서</li> </ul>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li>■ 세무서</li> <li>■ 국민건강보험공단</li> </ul>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자	① 상기 공통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합니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예 : 2011, 2013, 2015, 2018, 2020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p>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p> <p>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p> <p>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p> <p>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p> <p>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p> <p>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p> <p>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p>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p>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p> <p>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p> <p>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p> <p>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p> <p>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p> <p>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p> <p>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p> <p>-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p> <p>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p> <p>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p> <p>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p>

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9

### 계약체결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년 3월 16일 (월) ~ 2026년 3월 18일 (수)	더 플래티넘 센트럴포레 건본주택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860)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추후 별도 안내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 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구비사항

구분	해당구분		구비사항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증	본인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발급분, 아파트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정부수입인지 (종이문서용)		■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 초과 35만원 (사업주체와 균등 부담)
대리인 계약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상기 유의사항 참고)
	○		계약자 인감증명서	본인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아파트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 견본주택 비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의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명 계약 시 대리 접수 불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 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동산 분양 계약시 공급계약서, 추가옵션계약서를 작성 후 총 합산 금액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_방문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구매금액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 (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 시 최종 매수자까지)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나,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	예금주
공급대금 계좌	우리은행	1005-804-860980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모계좌(우리은행, 1005-804-860980, 예금주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 '공급대금',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입금하여야 하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3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301홍길동'으로 기재)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 상기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무상으로 시공되며 비확장형으로 선택이 불가합니다.

##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 분양권 전매 거래 시에 인지세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는 전매자 상호 간에 합의 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입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 관계 (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 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의 책임입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①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당첨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②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③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④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알선 조건은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공급대금의 60%(중도금) 범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시 대출취급기관 등에 의거 공급대금의 10%(계약금 1차, 2차)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은 계약일 이후 사업주체(시행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 ※ 단,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 [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대출불가시 무이자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가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1.10.21, 2025.06.25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VAT포함)

약식표기 (타입)	고객 부담 발코니 확장 공사비	비고
59A	무상	-
59B		
59C		
74		
84A		
84B		

- ※ 본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무상으로 시공되며, 비확장형으로 선택이 불가합니다.
- ※ 발코니 확장 금액은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되며, 별도의 계약체결은 없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공급계약 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후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은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후 동일 평형이라도 해당 등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허용오차 내)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단위 : 원/VAT 포함)

품목	적용내용	약식표기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체결시	입주시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도어	59A, 59B / 74 / 84A	1,400,000	140,000	1,260,000	-
	여닫이 도어	59C / 84B	1,400,000	140,000	1,260,000	
불박이장	침실3	59A, 59B, 59C / 74 / 84A, 84B	1,400,000	140,000	1,260,000	-
광폭강마루 (148X1,200)	거실+침실1+침실2+침실3+복도	59A, 59B, 59C	1,700,000	170,000	1,530,000	- 미선택시강마루(98X800)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다락층 제외 (다락층 : 강마루 시공)
		74	2,100,000	210,000	1,890,000	
		84A, 84B	2,400,000	240,000	2,160,000	
주방아일랜드 식탁상판	주방 아일랜드 식탁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매입형 멀티콘센트	59A, 59B, 59C	850,000	85,000	765,000	- 미선택 시 인조대리석(MMA) 상판
		74 / 84A	1,350,000	135,000	1,215,000	
		84B	1,200,000	120,000	1,080,000	
거실 스타일업	거실+복도 벽면 시트판넬 마감+거실 우물천장직간접등+스마트디밍미러스위치	59A, 59B, 59C / 74 / 84A, 84B	3,200,000	320,000	2,880,000	- 미선택 시 거실벽지 마감 및 거실 기본등 설치
드레스룸 특화	고급형 시스템선반 (벽판넬+조명형 시스템선반)	59A	3,500,000	350,000	3,150,000	- 미선택 시 기본 선반 제공 및 벽지 마감
		59B	2,500,000	250,000	2,250,000	
		59C	3,300,000	330,000	2,970,000	
		74	3,000,000	300,000	2,700,000	
		84A	4,500,000	450,000	4,050,000	
		84B	4,300,000	430,000	3,870,000	

주방 스타일업	홈바형장식장(장식장+엔지니어드스톤(벽+상판) 마감)+매입형 멀티콘센트+복도가구판넬+주방시트판넬+주방라인조명	84A, 84B	6,500,000	650,000	5,850,000	- 미선택 시 기본 벽지 마감 및 주방 기본등 설치
빌트인 가전특화	빌트인 가전제품(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빌트인 냉장고장(인출식 수납장)	59A, 59B, 59C / 74 / 84A, 84B	7,500,000	750,000	6,750,000	- 미선택 시 기본 냉장고장 설치

※ 추가선택품목 빌트인 가전특화 제조사/모델명 [제조사 : LG전자 / 모델명 : BC1L4AA(냉장), BC1F4AA(냉동), BC1K4AA(김치)]

※ 거실스타일업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시트판넬은 거실쇼파 뒷벽면, 복도 벽면에 설치 되며 계약 시 반드시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계약금, 잔금)	우리은행	1005-204-857888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납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초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추가선택품목 선택품목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선택품목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3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301홍길동'으로 기재).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입주시 개별 납부)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 전시 제품을 기준으로 하며, 제품의 품질·품귀·단종·신제품 출시·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별도로 계약·공급되는 사항으로, 미선택 시 기본 마감재로 시공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공급금액은 세대별·타입별로 상이하며,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 체결 이후 변경·취소가 불가하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 됩니다.
- 시공 일정 및 공정 진행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제한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배선,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의 사양·수량·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구조, 설비, 배관, 전기 여건 등에 따라 일부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선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타입별로 제품의 크기, 형태, 설치 위치, 구성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 타입이라도 좌·우 대칭 세대의 경우 배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추가선택품목 관련 사항은 견본주택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에 따릅니다.
- 모든 추가선택품목은 계약 전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 확인이 필수이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 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방특화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주방장식장 벽면은 기본 벽지로 마감 됩니다.
- 빌트인 가전특화 냉장고장(수납형)은 기본 냉장고장으로 설치 됩니다.
- 광폭강마루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기본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 거실특화 및 드레스룸특화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추가선택품목이 적용된 시트파넬 벽면은 기본 벽지로 마감되며 드레스룸 고급시스템선반은 기본 선반으로 제공 됩니다.
- 조명특화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거실 및 주방은 기본 조명등으로 설치 됩니다.
- 주방특화 빌트인 가전 및 불박이장 선택 시, 설치 부위의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 범위에서 제외되며, 해당 사항은 판매가 산정 시 반영된 금액입니다.
- 주방특화 가전제품(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등)은 제조사·모델이 지정되며, 수급 상황에 따라 등급 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냉장고장(수납형)의 의 경우 크기 및 내부 구성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거실 월패드에서 디밍 기능이 제공 됩니다.
- 조명특화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거실 천장은 기본 거실등이 설치되며 on/off 기능만 제공 됩니다.
- 거실특화 거실 우물천장 라인조명은 타입별로 크기 및 적용 범위가 상이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중문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현관 중문 상, 하부 레일은 바닥(마루, 디딤석)과 단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현관중문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중문 유리 사양은 단종 등의 사유로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타입별 중문의 형태 및 마감재 색상 등이 상이 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및 불박이장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드레스룸(고급형 시스템선반), 불박이장 등은 타입별 구조 차이로 크기·형태·구성이 상이 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가구(고급형 시스템선반) 간접조명 안정기 박스가 가구 내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옵션(무상) 유의 사항

품목	적용내용	약식표기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체결시	입주시	
시스템에어컨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59A, 59B, 59C / 74 / 84A ,84B		무상(기본 옵션)		(LG전자) 실내기 4대 / 실외기 1대
전동 루버	실외기실					-
대형 아트월	거실벽체(600X1,200)					-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상판					-
인덕션	3구 인덕션					(삼성전자)

- 기본 옵션은 세대에 무상으로 설치되며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기본 옵션 사항은 세대 설치위치, 제품정보 등은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와 기타 세대 내 조건 등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기타 가전제품의 기 선정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성능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기본옵션으로 제공되는 품목은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수량에 해당하는 무선리모컨을 제공하고, 유선 컨트롤러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월패드와 연동을 통해 제어가 가능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운전 또는 실외기에 의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기본 옵션은 견본주택 전시 제품을 기준으로 하며, 제품의 품질·품귀·단종·신제품 출시·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1 입주 관련 안내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라 아래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 개시 약 45일 전에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 통보합니다.
- ※ 사전방문 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 공사, 타일 공사, 주방 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등

### ■ 입주예정일 : 2027년 3월 예정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지하암반 발생,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 잔금완납, 소유권 이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계약자의 관리 부재, 부주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와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근로자휴게실, 방재실, 경로당,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37조 및 동법 시행령 36조, 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12 단지역건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의 최초 주택건설사업승인일은 2022년 12월 이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사업승인 시점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모집공고, 견본주택, 각종 홍보물 등은 공고 시점 기준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 도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추후 현장 여건, 관계기관 협의, 사업승인조건의 이행, 각종 인증 진행(예비인증 및 본인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현장 여건 반영, 관계기관 협의, 품질 개선, 오류 또는 오기 수정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계약 시에는 이에 관한 제반 권리를 위임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추후 현장 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방음벽 등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권(채광,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등은 현장 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계약자의 취향 및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사용검사 전·후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외의 변경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수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절차에 요구되는 각종 도서 등은 요구자가 직접 준비해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규모 및 각종 면적(주거전용, 주거공용, 계약면적, 대지지분 등)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하였으나, 계약시에는 소수점 이하에서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li> <li>- 등기 시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 등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의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으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호 정산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li> <li>-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도로, 도시철도,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일부 노선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li> <li>-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li> <li>-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li> <li>-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li> <li>-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문화재 발굴,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없고 지체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li> <li>②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li> <li>③ 영리 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 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li> </ul> </li> <li>-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li> <li>-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 현장 상황에 따라 단지명,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등은 지자체 승인 관련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추후 인허가변경 시 현장 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아파트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석재, 목재 등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균질한 형태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방향, 색상, 베인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li> </ul>

구분	내용
	<p>품질 하자 판단은 KS 기준을 따릅니다. (단, 천연자재는 그 특성상 갈라짐이나 불균일한 패턴의 발현과 색상의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하자로 간주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생산 자재 (타일, PET, 시트 등)의 경우, 일정한 형태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설치 방향, 색상, 베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li> <li>-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기관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 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li> <li>- 내화 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li> <li>-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주체와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계약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 저하 발생 시 "계약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각종 건축 인허가와 관련 심의 및 평가 등의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인접대지와 도로 경계 및 레벨, 도로시설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토목 옹벽 및 건축 옹벽 디자인과 마감재, 녹화계획 높이 등은, 실제 시공 시 기능 및 성능개선, 주변 실제 현황,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 없이 향후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계단실, 외부 통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 및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한 라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li> <li>- 전시 및 게시되는 모형 및 CG 등의 자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ul>
<b>주변 여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단지의 대지경계 외부에 위치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해당 기반시설의 개발계획이 취소되거나 구체적인 사항(도로 폭 등)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주변 산지의 절·성토 작업 또는 옹벽 등 각종 시설물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도로표지 등은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주변 도로 및 대지경계 밖 도로는 단지 내 소유가 아니며, 실 시공시 폭,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변 단지의 신축, 개축, 대수선, 조경 및 토목 등의 공사 등과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 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li> </ul>

구분	내용
	<p>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인근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기반시설 조성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사업지 동쪽에 양주천보산림욕장이 존재하며, 도시개발사업은 주변부지에 개발이 진행될 예정(미정)입니다.</li> <li>- 단지 주변 도로 신설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도로의 상황 및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광송초등학교, 삼송중학교, 양주고등학교에 배치 가능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다만, 학교 배정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주변 개발사업 및 학생 발생 추이, 교육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에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 시설 유무, 소음, 진동, 분진, 조망, 일조, 진입로, 상업 시설,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텃밭, 근린생활시설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b>배치/동선 /외부공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요인으로 인해 세대 간 일조권, 환경권(소음, 진동, 눈부심 등), 조망권, 사생활 등의 침해 및 접근성 등 거주환경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높이, 폭, 디자인, 이격거리, 공법 등 세부사항은 현장 여건,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① 지붕 및 옥탑 설치물과의 인접 [조경(식재), 의상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실외기, 태양광 발전 설비, 연도, 소방설비 등]</li> <li>② 옥외 동선 관련 설치물과의 인접 [옥외 계단, 옥외 엘리베이터, 계단실, 단지 내 도로, 소방차 전용구역, 난간 등]</li> <li>③ 조경 관련 설치물과의 인접 [파고라,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li> <li>④ 단차처리를 위한 설치물과의 인접 [토목옹벽, 건축옹벽, 석축, 사면처리 등]</li> <li>⑤ 기타 지상 설치물과의 인접 [주차장 출입구,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비용 급·배기구, DRY AREA(환기구), 필로티, 맨홀, 트렌치, 맨홀, 가스 정압기, 계량기, 탐라이트 등]</li> <li>⑥ 동호수별 위치, 향, 층, 동간거리의 차이</li> <li>⑦ 부대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과의 거리의 차이</li> <li>- 단지 내 비상 차로 및 포장 구간 중 일부는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차 전용구역으로 표기 및 활용될 수 있습니다.</li> <li>- 공급 시점의 여건에 따라 부지 내 도시가스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위치에 따라 인접 세대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별도의 전기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li> <li>-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계량기함 및 맨홀이 부지 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외부공간은 크게 4개의 레벨로 구성됩니다. 이에 따라 동별 지상 주 출입구 레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각 부 단차는 토목옹벽, 건축옹벽, 사면처리 등으로 처리되며 세부사항(공법, 범위, 형태, 마감 등)은 현장 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주변 도로 레벨계획의 변경, 현장 여건,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 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단 추가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li> </ul>

구분	내용
	<p>형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내부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 홍보물(모형, CG 등) 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본 아파트 지정된 외부공간에 설치되며, 해당 폐기물과 쓰레기의 수거 또한 본 아파트 외부를 통하여 수거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형태 또는 위치는 인허가 변경, 조건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 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음식물 차량 등에 의한 차량 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 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주변 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의 배치구조,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정 공간(녹지 등) 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 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비상 차량(소방차)의 정차 위치로 표기 및 활용될 수 있습니다.</li> <li>- 대지 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 차이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 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외부 승강기가 102동, 105동, 107동, 108동 인근에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해당 동 세대에 일부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로티 인접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환경권(소음)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li> <li>- 동 조합 및 층수에 따라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사양(속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동 조합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 1대당 이용 세대수의 차이가 있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 승강로 및 기계실에 인접한 세대는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 공용부(승강기홀, 계단실 등)에 설치되는 창호의 수량 및 세부 사양(크기, 재질 등)은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 창호와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옥탑, 지붕, 외벽 등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 측뢰, 항공장애등, 태양광 발전 설비, 연도설비, 소방설비, DRY AREA(환기구), 안전사고를 위한 설비 주변난간 등 경계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것들로 인한 소음, 냄새, 매연, 진동, 빛의 산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최상층 다락층 외부에는 태양광, 야간조명, 난간이 설치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건축물 측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동, 상가의 우편함 위치, 디자인,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단위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호의 방충망은 외부에 면한 창 중 개폐 창에 설치되며 창짝 중 한쪽의 창짝에만 설치됩니다. (실외기 그릴 창은 롤 방충망 설치)</li> <li>-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확장형의 경우 발코니 외창), 다락에 고정식 유리 난간이 설치되며 높이, 디자인 등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유리 난간이 설치됨에 따라 이삿짐 이동 시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li> <li>- 가구 및 마감재 시공으로 인해 일부 면적은 바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가구 설치 부위의 비노출 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욕실장 측면 및 후면에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② 일반 가구 상부와 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③ 주방가구와 접한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li> </ul> </li> </ul>

구분	내용
	<p>④ 주방가구 상부와 하부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방가구의 냉장고 설치공간,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공간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점의 표준적인 국산제품의 크기를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대형가전 또는 입주 시점의 신제품의 경우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각 타입의 설치공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대형 가구, 가전의 경우 반입 동선 및 도어 사이즈의 제한으로 반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각 타입의 반입 동선 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양문형 냉장고의 경우 냉장고가 주방 방향으로 일부 돌출되거나 냉장고와 가구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li> <li>- 싱크대 주방가구 상판은 상판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으며 현장오차로 인해 주방가구 상판이 냉장고장 돌출라인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 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급수 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 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실내외 온도 차가 크거나 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빨래 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주기적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74, 84A, 84B 타입 확장형의 경우 침실1(안방)에 별도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59A, 59B, 59C타입 확장형의 경우 안방 발코니가 설치됩니다.</li> <li>- 다용도실 및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 배관, 배수 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li> <li>- 현관창고 바닥에는 타일이 설치됩니다.</li> <li>- 세탁기, 건조기의 제품 유형 및 설치방법에 따라 다용도실 창호 사용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전 세대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하여 대피공간이 설치됩니다.</li> <li>-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li> <li>- 실외기 루버 자동개폐장치의 타입, 형태, 색상, 위치 등 세부사항은 본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일부 벽체는 경량 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 및 못 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및 탈락에 유의하여야 합니다.</li> <li>- 실별 치수에는 천장 몰딩이나, 하부 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 배치 등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방가구 등 수납공간 계획은 현장여건반영, 사용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창호 세부 사양 및 디자인(개폐 방향, 창호 분할, 손잡이 타입 및 위치, 형태, 컬러, 치수, 상세, 부속철물 등)은 현장 여건 및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세대 커튼박스 깊이는 배관 설치 등을 사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천장 내부에 상부 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점검구가 설치됩니다.</li> <li>- 욕실 및 다용도실 문턱은 물 넘침 방지를 위해 바닥보다 높게 설치되나 개폐 시 욕실화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및 다용도실 천장 높이는 바닥 타일 마감 구매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 치수와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및 다용도실, 실외기실, 대피공간의 바닥 타일 나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쿡탑은 3구 인덕션으로 시공되나, 주방 내부로 가스배관이 인입되어 설치됩니다.</li> <li>- 거실 부분의 천장고는 2.3m (우물천장 부분 2.4m)이며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다용도실 등의 발코니 부분과 욕실은 천장고가 상이합니다.</li> <li>- 최상층 세대의 경우 단열재 등의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거실 우물천장 부분의 천장고가 동일 평형의 다른 세대 대비 낮을 수 있습니다.</li> <li>- 최상층 세대의 경우 일부공간이 다락층 계단실로 변경되어 설치되며, 계단실로 변경된 공간의 마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상층 세대의 다락층 천장높이 및 형태는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분양시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욕실 등에 세대용 통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환경권(냄새, 소음, 진동, 해충, 미관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다용도실 내부 균일한 마감을 위해 재료분리대가 설치됩니다.</li> <li>- 주방가구, 수납가구의 하드웨어는 본공사시 동등사양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내부 별도의 전동빨래건조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li> </ul>
전기/기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되며, 세대 내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 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분전반(전기분전반)은 침실 내부, 다용도실 등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통신단자함은 세대 타입, 침실 내부, 팬트리 등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통신단자함, 세대(또는 호실) 분전반, 전기 배선기구류, 조명기구, 전기통신 관련 마감재의 제품 제원, 위치, 높이, 수량 등은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 및 옵션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급수 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 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다용도실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홍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음)</li> <li>- 레인지후드 배기덕트로 인해 일부 상부장 내에 자동식 소화기 설치에 따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레인지후드 배기는 직배기 방식입니다.</li> <li>-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조명이 방 중심 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li> <li>-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 소등 스위치의 기능에는 승강기 호출 기능(하행만 가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 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 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 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전열교환기, 에어컨, 보일러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실외기실에는 배관,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는 주택형별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및 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 평형 욕실 내 바닥 난방이 설치되나 가구장 하부, 샤워부스, 욕조 하부 등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팬이 설치됩니다.</li> <li>- 화장실 천장에 상부층의 급수급탕 분배기가 매립 혹은 노출 형태로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급수, 급탕 분배기 설치 부위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세대 타입별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수량, 사양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li> <li>-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 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아일랜드장, 화장대 등 가구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 또는 케이블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li> <li>- 각 세대 옥탑 층에는 세대용 통기관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미관 저해, 소음 및 진동,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별 단차로 인해 옥탑 층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li> </ul>
<b>부대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은 현장 여건 반영, 관계기관 협의, 품질 개선, 오류 또는 오기 수정 등을 목적으로 용도, 구획, 위치, 면적, 창호, 마감재 등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의 마감재는 단종 등에 따라 동급 이상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의 기본 마감 외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은 입주 후에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하여 운영·관리 방안을 결정하고, 입주자의 부담으로 직접 운영합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로의 인수인계 전까지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분 내 일부 공간은 일정 기간(입주 개시 후 약 30개월, 단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동안 입주 지원센터, A/S 센터 등으로 운영되며 이에 대한 임대차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요 부대시설의 위치는 가급적 단지내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되었으며 동별로 접근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상층 외부에 설치되어 쓰레기 및 수거 차량에 의한 환경권(소음, 진동, 눈부심, 악취, 해충, 분진, 미관 저해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이동,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을 기준으로 하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실외 어린이놀이터(101동, 102동, 104동, 106동, 107동 부근), 주민운동시설(103동, 104동 부근) 등이 설치되며, 시설물의 개수 및 종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은 주 출입구 인근 1개소, 부출입구 인근 1개소 총 2개소 위치하며 인접 세대는 환경권(소음, 진동, 눈부심, 냄새, 해충, 분진, 미관 저해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공동주택의 지상, 지하 및 옥외공간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의 설비(실외기, 배선, 배관, 조명 등)공간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계약자가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옥상 등에 각종 설비(실외기 등)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이로 인한 환경권(소음, 진동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3,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b>주차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주차장은 750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24대로 총 774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공동주택 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합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하였으나 대지형태, 주동배치 등에 따라 동별 인접 주차구획 분포, 출입 동선 길이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동의 위치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특정 층에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 주차장 출입구는 단지 남서측 1개소(지하 3층으로 진입), 단지 북동측 1개소(지하 1층으로 진입) 총 2개소입니다.</li> <li>- 주차장 계획(동선, 주차구획 배치, 전기차 충전구획 배치 등)은 현장 여건 반영,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축법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등의 공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 상부에 별도 천장 마감재 없이 각종 설비, 배선, 배관이 노출 설치됩니다. 또한 데크슬라브 설치부위에는 금속판재가 노출될 수 있으며 적용 부위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 주차장 3개 층에 분산 설치됩니다.</li> <li>-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타입,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li> <li>-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구획에 일반 차량 주차, 충전 이외의 점유, 충전방해 행위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시공사와 협의된 전기차 충전사업자에 의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사업자를 통한 전기차 충전전력공급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 주동 출입 동선,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의 운전석/보조석 문과 기둥이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ul>
<b>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조경(식재, 녹지, 보도 및 차도 포장, 휴게 및 운동시설물, 수경 시설물, 기타 조경부대시설물, 조명 등)의 세부사항(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재료, 색채, 선형, 형태, 패턴, 수종 등) 및 동선계획은 현장 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조경과 관련하여 입주자 인계 이후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비용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li> <li>- 저층 세대는 식재로 인해 일조권, 환경권(소음, 벌레 등),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차 및 경사 인접 구간 일부는 실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li> <li>-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소방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비상 차량 동선, 소방차 전용구역, 공기안전매트 등의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경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ul>
<b>외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용 이미지 등에 표시된 주변 단지 및 건물, 시설물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된 내용을 임의로 제작한 것으로, 분양계약서 작성 시와 다르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분양광고물(모형/조감도/각종 CG/인쇄물/팸플릿 등)에 표현된 입면 디자인(색채/줄눈) 및 외장 마감, 조경계획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 시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는 측량 결과,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의 주동,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데크, 옹벽, 외부 건축 구조물 등 외관 디자인(형태/마감재/색채/장식물/사인물/커튼월록 등)은 인허가 과정, 경미한 설계변경, 자재수급, 디자인 개선, 시공상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 사유(품질 저하)가 아닌 이상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따른 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입면 구성요소(마감재/패턴/색상/사인물/장식물/캐노피 등)는 브랜딩 향상을 위해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있더라도 품질이나 성능상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입주자 동의 없이 진행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색채계획, 경관 구조물 설치, 경관조명 설치, 석재디자인(패턴/마감재/높이/면적 등), 마감재 입면 돌출은 단지 경관 및 주변 레벨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주동 저층부 일부는 석재마감이 적용되나 코어 및 일부 구간은 도장 마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li> <li>- 옹벽 및 데크 입면의 주 동선 구간은 석재 또는 건식마감이 적용되나 그 외 구간은 도장 및 뿔칠이 적용됩니다. 저층부 동 출입구의 형태, 캐노피 위치, 적용 면적은 추후 조경 동선계획 및</li> </ul>

구분	내용
	<p>소방안전매트 위치, 배관라인 간섭, 보행자 폭 확보, 사인물 부착위치 등에 의해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주는 추후 구조검토 및 보차안전 공간확보 계획에 의해 구조물의 높이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동외벽, 발코니 등에는 외부 장식물, 조명, 싸인,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는 환경권(소음/눈부심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별 보일러 연도가 외벽에 노출되어 설치됨에 따라 미관저해, 백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장식용 옥탑 구조물의 높이는 구조물 안전검토 및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높이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거동의 일부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며, 최종 설치위치 및 높이는 발전효율, 구조물 안전강화 등으로 인해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공용부 및 단지 내에 설치되는 난간은 실제 시공 시 상세하게 계획되며, 분양 모형 및 CG 등에 표현된 난간은 개략적인 이미지로 단순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li> <li>- 문주 및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과 인접한 일부 동 및 세대는 시야 간섭이 있을 수 있어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li> </ul>
<p>전기/ 통신/ IoT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케이블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 맨홀, 통신 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입입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통신실(TPS실)의 Work Group Switch Hub, 광분배기 및 통신 세대단자함 내에 시설되는 MultiPlexer 등은 기간사업자 제공 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홈넷 서버 운용을 위한 전용 IP 비용은 준공 후 6개월까지 지원함. 그 후 발생하는(인터넷 업체 변경 포함) 전용 IP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li> <li>- 무인 택배 및 주차 관제 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 관제 시스템(입출차 차단기 등)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조명기구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다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신재생에너지 공사(ex. 태양광 발전 공사)는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비의 구조 및 형태, 설치 위치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에너지 생산량은 자연환경 및 입주자의 유지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li> <li>- 홈넷사 제공 APP에서 세대 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등 제어가 가능합니다.</li> <li>-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 2 및 방송 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 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7동</li> <li>- 스마트폰 원패스 기능은 휴대폰 및 사용 OS 버전 등 아래의 내용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또한, 아래의 기능이 휴대폰 내에서 활성화 시에만 기능이 구현됩니다. ※ GPS, Bluetooth, 위치 권한, 원패스 어플리케이션 활성화 등이 'ON'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 배터리 사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소 요구사양 : Bluetooth Version 4.0 이상 / Android : v4.3 이상 / IOS : v13.0 이상 / Galaxy S6 이상 및 Apple I-phone 6s 이상 ※ 해당 어플은 최신 상태를 유지</li> </ul>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amp;통신시설물(공용조명 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포장시설, 수목 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 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 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과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한국전력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부지 내 한전 개폐기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li> <li>- 소방내진법규에 따라 위생·소방용 구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시 소방 및 장애인 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허가 완료 시보다 법적 의무 적용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맞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분양 시 계획된 경관조명 계획은 공사 중 현장 여건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자문 및 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 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 동,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입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동 및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대지 내 개설된 도로는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확보된 도로로 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입주자에 있습니다.</li> <li>- 옥상, 옥탑, 지하 등에 적용된 방수공법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현장 여건, 관계기관 협의, 품질 및 유지관리성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전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 공용부 마감, 색채, 자재, 공법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현장 여건, 관계기관 협의, 품질 및 유지관리성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전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b>건본주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법」에 의거 건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는 건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 주차장, 승강기의 인승, 용량, 탑승 위치 등)은 최종사업승인 도서에 따라 시공되며, 사업승인 도면상 확인이 어려운 부위는 최종 사용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건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는 실 시공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 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 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 계약 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므로 계약자는 사전에 건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li> <li>-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계약 시 제시된 공급안내서를 포함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등의 각종 인쇄물-CG(조감도, 투시도) 및 면적, 치수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개소,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는 측량 결과, 각종 심의 결과(건축위원회 심의 등),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 등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조·성능·제품의 사양은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 스프링클러 위치, 점검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 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별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창호, 가구, 바닥재,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석재, 걸레받이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단차, 코너, 마감재 접합부, 패턴 등 은 본 공사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 걸이, 수건걸이, 코너 선반, 수건 선반 등), 욕실 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석재 및 타일 등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현관창고, 아트월, 욕실, 발코니, 현관, 다용도실 등)</li> <li>-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은 84A타입만 설치되며, 건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발코니 변화 여부, 가구 배치, 실면적 등 건본주택 설치 타입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CG, 모형,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그 설치</li> </ul>

구분	내용
	<p>위치가 결정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도의 외부 식재등 조경과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의 외벽 색채, 마감, 줄눈, 옥상 구조물, 그 외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모형으로 실제 공사 시 일부 사항이 설계변경(입주자 동의 없이 진행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 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 시 냉방 전용 시스템 에어컨으로 제공됩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 패드, 전자식 스위치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실제 색상, 패턴이 상이할 수 있고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와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시공된 단위세대 UNIT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공사 시 동질 또는 동급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 등은 연출을 위한 전시용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전시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콘센트, 스위치 및 조명, 바닥 배수구, 욕실 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각 실에 설치된 전열교환기 디퓨저는 목업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본공사 시 각실의 전열교환기 디퓨저 설치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ul>
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li> <li>- 각종 홍보 인쇄물에 이용된 단지 이미지, 단지모형, 세대모형, CG, 도면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미지에 표현된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의 외벽 색채, 마감, 줄눈, 옥상 구조물, 그 외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은 실제 공사 시 일부 사항이 설계변경 (입주자 동의 없이 진행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 (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가전, 소품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 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카달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li> <li>- 세대 VR 자료는 공간감, 마감재 느낌 등은 개인별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하였습니다.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6-101-0000700 호	35,927,500,000 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보증 약관 (보증사고, 보증채무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당사가 본 아파트 사업장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결제관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 분양대금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또는 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또는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 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 (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 (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상기내용은 공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람(1566-9009)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표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 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 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KS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2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각 세대 내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비(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지하 2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지하 3층	2.7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지하 4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 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내진 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MMI 등급, I~Ⅶ)으로 표기

<b>구분</b>	<b>내진능력(MMI 등급)</b>
내진 능력산정기준	Ⅶ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본 공고문에 제시된 인증서는 예비인증서로 본인증 진행 시, 항목별 점수, 등급 등 세부사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현장 여건,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의무 등급의 변화가 없는 선에서 유사한 성능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h3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h3> <p style="text-align: center;">■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lt;개정 2023. 6. 30.&gt;</p> <h4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h4> <p>1. 공동주택명 :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187-47번지 일원 공동주택          2. 신 청 자 : 삼송지역주택조합          3. 대 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187-47번지 일원          4. 성 능 등 급</p> <p>가. 소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생활층적용 차단성능</td><td>★</td></tr> <tr><td>2. 중합층적용 차단성능</td><td>★</td></tr> <tr><td>3. 세대 간 경계벽의 자율성능</td><td>★★★★</td></tr> <tr><td>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td>★★</td></tr> <tr><td>5. 화장실 급배수 소음</td><td>★★★</td></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내구성</td><td>★</td></tr> <tr><td>2. 가벽성</td><td>★★★★</td></tr> <tr><td>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td><td>★</td></tr> <tr><td>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td><td>★★</td></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기층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td><td>-</td></tr> <tr><td>2. 과도한 지하개발 방지</td><td>-</td></tr> <tr><td>3. 토공사 절토·성토량(영양기·흙쌓기를 한 양) 최소화</td><td>★★★</td></tr> <tr><td>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td><td>-</td></tr> <tr><td>5. 에너지 성능</td><td>★★★★</td></tr> <tr><td>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정비</td><td>★</td></tr> <tr><td>7. 신·재생에너지 이용</td><td>-</td></tr> <tr><td>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td><td>-</td></tr> <tr><td>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td><td>★</td></tr> <tr><td>10. 환경성선인 제품(EPP)의 사용</td><td>★★★★</td></tr> <tr><td>11. 저탄소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2. 사물인터넷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4. 녹색건축자의 적용 비율</td><td>★★★★</td></tr> <tr><td>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td><td>★★★★</td></tr> <tr><td>16. 미분류기</td><td>-</td></tr> <tr><td>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td><td>★</td></tr> <tr><td>18. 열수행 기기 사용</td><td>★★★★</td></tr> <tr><td>19. 물 사용량 모니터링</td><td>★★</td></tr> </table> <p>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단지내·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td><td>★★★★</td></tr> <tr><td>2. 대중교통의 근접성</td><td>★★★★</td></tr> <tr><td>3. 자전거주자랑 및 자전거도로의 최합성</td><td>★★</td></tr> <tr><td>4. 생활편의시설의 근접성</td><td>★★★★</td></tr> <tr><td>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td><td>★★★★</td></tr> <tr><td>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td><td>★★★★</td></tr> <tr><td>7. 사용자 매뉴얼 제공</td><td>★★★★</td></tr> <tr><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td><td>★★★★</td></tr> <tr><td>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td><td>★</td></tr> <tr><td>10. 공동공간에 사회적 약자배려</td><td>★★★★</td></tr> <tr><td>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td><td>★★★★</td></tr> <tr><td>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td><td>★</td></tr> <tr><td>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td><td>★</td></tr> <tr><td>14. 방범안전 콘덴츠</td><td>★★★</td></tr> <tr><td>15. 주차공간 추가 확보</td><td>-</td></tr> </table> <p>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감지 및 경보설비</td><td>★</td></tr> <tr><td>2. 제연설비</td><td>★★</td></tr> <tr><td>3. 내화성능</td><td>★★</td></tr> <tr><td>4. 수평 피난거리</td><td>★★</td></tr> <tr><td>5. 복도 및 계단 유도노면</td><td>★★</td></tr> <tr><td>6. 피난설비</td><td>★</td></tr> </table>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12월 26일</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span>  <small>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small> </p>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층적용 차단성능	★	2. 중합층적용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자율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벽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층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방지	-	3. 토공사 절토·성토량(영양기·흙쌓기를 한 양)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정비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인 제품(EPP)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사물인터넷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미분류기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열수행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자랑 및 자전거도로의 최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근접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에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덴츠	★★★	15. 주차공간 추가 확보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 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노면	★★	6. 피난설비	★	<h3 style="text-align: center;">녹색 건축 예비 인증서</h3> <p style="text-align: center;">■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lt;개정 2021. 3. 24.&gt;</p> <h4 style="text-align: center;">녹색건축 예비인증서</h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 colspan="2">건축물 개요</th><th colspan="2">인증 개요</th></tr> <tr><td>건축물명</td><td>: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187-47번지 일원 공동주택</td><td>인증번호</td><td>: G-SEED-P-2024-1188-9</td></tr> <tr><td>건축주</td><td>: 삼송지역주택조합</td><td>인증기관</td><td>: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td></tr> <tr><td>준공(예정)일</td><td>: 2027년 2월 1일</td><td>유효기간</td><td>: 2024. 12. 26. ~</td></tr> <tr><td>주 소</td><td>: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187-47번지 일원</td><td colspan="2">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td></tr> <tr><td>층 수</td><td>: 지하 4층, 지상 20층</td><td colspan="2"></td></tr> <tr><td>면 적</td><td>: 92,608.4674㎡ (평가면적: 88,691.9431㎡)</td><td colspan="2"></td></tr> <tr><td>건축물의 주된 용도</td><td>: 공동주택(아파트6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td><td colspan="2"></td></tr> <tr><td>설 계 자</td><td>: ㈜디케이엠 건축사사무소</td><td colspan="2"></td></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인증 등급</p> <p>인증등급 : 우량(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29호, 환경부 고시 제2023-147호</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우량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종합등급 ★ ★ ☆ ☆</p> </div>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12월 26일</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span>  <small>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small> </p> <p>※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187-47번지 일원 공동주택	인증번호	: G-SEED-P-2024-1188-9	건축주	: 삼송지역주택조합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준공(예정)일	: 2027년 2월 1일	유효기간	: 2024. 12. 26.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187-47번지 일원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층 수	: 지하 4층, 지상 20층			면 적	: 92,608.4674㎡ (평가면적: 88,691.9431㎡)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6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설 계 자	: ㈜디케이엠 건축사사무소			<h3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h3> <p style="text-align: center;">■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lt;개정 2017.1.20.&gt;</p> <h4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h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 colspan="2">건축물 개요</th><th colspan="2">인증 개요</th></tr> <tr><td>건축물명</td><td>: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187-47번지 일원 공동주택</td><td>인증번호</td><td>: 24-주-에-1+-0200</td></tr> <tr><td>준공연도</td><td>: 20270201</td><td>평가자</td><td>: 김성희</td></tr> <tr><td>주 소</td><td>: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187-47번지 일원</td><td>인증기관</td><td>: 한국부동산원</td></tr> <tr><td>층 수</td><td>: 지하4층 / 지상20층</td><td>운영기관</td><td>: 한국에너지공단</td></tr> <tr><td>연면적</td><td>: 92,608.4674㎡</td><td>유효기간</td><td>: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td></tr> <tr><td>건축물의 주된 용도</td><td>: 공동주택</td><td colspan="2"></td></tr> <tr><td>설 계 자</td><td>: ㈜디케이엠 건축사사무소</td><td colspan="2"></td></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인증 등급</p> <p>인증등급 : 1+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 colspan="6">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th></tr> <tr><th>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sup>2</sup>·년)</th><th>요구량</th><th>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m<sup>2</sup>·년)</th><th>등급</th><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m<sup>2</sup>·년)</th><th>배출량</th></tr> <tr><td>에너지저소비량 건축설계</td><td>0</td><td>에너지효율</td><td>1+</td><td>CO<sub>2</sub> 배출</td><td>29.0</td></tr> <tr><td>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제</td><td>85.3</td><td>에너지효율</td><td>1+</td><td>CO<sub>2</sub> 배출</td><td>29.0</td></tr> <tr><td>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제</td><td>85.3</td><td>에너지효율</td><td>1+</td><td>CO<sub>2</sub> 배출</td><td>29.0</td></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 colspan="6">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th></tr> <tr><th>구분</th><th>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sup>2</sup>·년)</th><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sup>2</sup>·년)</th><th>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m<sup>2</sup>·년)</th><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m<sup>2</sup>·년)</th><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m<sup>2</sup>·년)</th></tr> <tr><td>냉방</td><td>0.0</td><td>0.0</td><td>0.0</td><td>0.0</td><td>0.0</td></tr> <tr><td>난방</td><td>40.7</td><td>76.9</td><td>58.6</td><td>15.9</td><td>7.2</td></tr> <tr><td>급탕</td><td>30.7</td><td>35.6</td><td>26.3</td><td>4.9</td><td>2.2</td></tr> <tr><td>조명</td><td>13.9</td><td>10.4</td><td>28.6</td><td>4.9</td><td>1.0</td></tr> <tr><td>환기</td><td>-</td><td>2.1</td><td>5.7</td><td>1.0</td><td>1.0</td></tr> <tr><td>합계</td><td>85.3</td><td>125.0</td><td>119.2</td><td>29.0</td><td>29.0</td></tr>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p> <p>※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 설치된 [ V ]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론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p>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12월 20일</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한국부동산원</span>  <small>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small> </p>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187-47번지 일원 공동주택	인증번호	: 24-주-에-1+-0200	준공연도	: 20270201	평가자	: 김성희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187-47번지 일원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층 수	: 지하4층 / 지상20층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 92,608.4674㎡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디케이엠 건축사사무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 <sup>2</sup> ·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m <sup>2</sup> ·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 <sup>2</sup> ·년)	배출량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설계	0	에너지효율	1+	CO <sub>2</sub> 배출	29.0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제	85.3	에너지효율	1+	CO <sub>2</sub> 배출	29.0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제	85.3	에너지효율	1+	CO <sub>2</sub> 배출	29.0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 <sup>2</sup> ·년)	냉방	0.0	0.0	0.0	0.0	0.0	난방	40.7	76.9	58.6	15.9	7.2	급탕	30.7	35.6	26.3	4.9	2.2	조명	13.9	10.4	28.6	4.9	1.0	환기	-	2.1	5.7	1.0	1.0	합계	85.3	125.0	119.2	29.0	29.0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층적용 차단성능	★																																																																																																																																																																																																																																																															
2. 중합층적용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자율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벽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층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방지	-																																																																																																																																																																																																																																																															
3. 토공사 절토·성토량(영양기·흙쌓기를 한 양)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정비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인 제품(EPP)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사물인터넷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미분류기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열수행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자랑 및 자전거도로의 최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근접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에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덴츠	★★★																																																																																																																																																																																																																																																															
15. 주차공간 추가 확보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 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노면	★★																																																																																																																																																																																																																																																															
6. 피난설비	★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187-47번지 일원 공동주택	인증번호	: G-SEED-P-2024-1188-9																																																																																																																																																																																																																																																													
건축주	: 삼송지역주택조합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준공(예정)일	: 2027년 2월 1일	유효기간	: 2024. 12. 26.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187-47번지 일원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층 수	: 지하 4층, 지상 20층																																																																																																																																																																																																																																																															
면 적	: 92,608.4674㎡ (평가면적: 88,691.9431㎡)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6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설 계 자	: ㈜디케이엠 건축사사무소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187-47번지 일원 공동주택	인증번호	: 24-주-에-1+-0200																																																																																																																																																																																																																																																													
준공연도	: 20270201	평가자	: 김성희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187-47번지 일원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층 수	: 지하4층 / 지상20층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 92,608.4674㎡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디케이엠 건축사사무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 <sup>2</sup> ·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m <sup>2</sup> ·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 <sup>2</sup> ·년)	배출량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설계	0	에너지효율	1+	CO <sub>2</sub> 배출	29.0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제	85.3	에너지효율	1+	CO <sub>2</sub> 배출	29.0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제	85.3	에너지효율	1+	CO <sub>2</sub> 배출	29.0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 <sup>2</sup> ·년)																																																																																																																																																																																																																																																											
냉방	0.0	0.0	0.0	0.0	0.0																																																																																																																																																																																																																																																											
난방	40.7	76.9	58.6	15.9	7.2																																																																																																																																																																																																																																																											
급탕	30.7	35.6	26.3	4.9	2.2																																																																																																																																																																																																																																																											
조명	13.9	10.4	28.6	4.9	1.0																																																																																																																																																																																																																																																											
환기	-	2.1	5.7	1.0	1.0																																																																																																																																																																																																																																																											
합계	85.3	125.0	119.2	29.0	29.0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별도)

구분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감리회사	(주) 청화종합감리공단건축사무소	(주) 신원기술단	(주) 한국코아엔지니어링	(주) 재원종합엔지니어링
계약금액	2,962,831,300	610,469,000	839,765,300	248,6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시행사(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삼승지역주택조합, 쌍용건설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양주시 삼승로38번길 19, 5층 502호(삼승동, 자이안상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신천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신천동)
등록번호	283-17-02033, 110111-0220395	110111-0220395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꼭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안내



-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860
- ※ 더 플래티넘 센트럴포레 홈페이지 주소 : <http://양주더플래티넘.kr>
- ※ 더 플래티넘 센트럴포레 분양문의 : 031-821-9990